



의안번호

제132호

##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(2차)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0. 10. 13.

#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(2차)

의안 번호	제13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10. 13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평생교육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【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】

- 설립일 - 1998. 12. 28.
- 일반현황 - 임원현황 : 이사 12명, 감사 2명  
- 기본재산 : 4,654,000천원
- 설립목적 - 인재육성을 위한 초·중·고·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
-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지원사업

### □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

- 既(1차) 출연금(2020년 본예산) : 540,000천원  
-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·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출연
- 금회(2차) 출연금 (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) : 774,200천원  
-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으로 2016년부터 논산시에서 역점 추진한 『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』이 중단됨  
- 대상 학생들의 상실감을 보상해 주고 논산시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자세를 배양하기 위하여  
-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에 『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』를 출연하여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□ **재원 확보 방안**

○ 2020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 감액 : 9억6천4백5십만원

부서·정책·단위·세부·과목		산출근거
평생교육과		
학교협력및지원		
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		
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		
자치단체등이전		
		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◎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      450,000,000원 ◎ 중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      514,500,000원

○ (재)논산시장학회 출연금 증액 : 7억7천4백2십만원

부서·정책·단위·세부·과목		산출근거
평생교육과		
학교협력및지원		
장학금 지원		
장학금 지원사업		
출연금		
		01 출연금 ◎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(논산시 출연) 1,174,200,000원-기정400,000,000원=774,200,000원

※ 산출기초 : 2,212명(관내 중3, 고2 재학생) × 350,000원

□ **그동안 출연 현황**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합계	530,000	530,000	540,000	540,000	540,000
출연금 (시비100%)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
출연금 (협력사업비)	130,000	130,000	140,000	140,000	140,000

□ **관련법규**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

## 참고 1

##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

###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공기업정책과), 02-2100-3550

**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**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#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10.9.30.] [조례 제677호, 2010.9.30., 전부개정]

평생교육과, 041-746-5761

**제7조(출연금)**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18.6.28.] [법률 제15528호, 2018.3.27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, 02-2100-3506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자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

## 참고 2

##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칭 : 논산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
- 추진기간 : 2016년 ~ 2019년  
(2016년부터 年 단위로 지속 추진)
- 참여대상 :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전원
- 연수지역 : 『중학교』 일본 오사카-나라-교토 일원(2박 3일)  
『고등학교』 중국 상해 일원(3박4일)
- 예산지원 : 연수비용의 50% 보조

### □ 참여인원

구분	계	2016	2017	2018	2019
계	9,285명	1,706명	2,333명	2,735명	2,511명
중학교	2,780명	-	555명	1,137명	1,088명
고등학교	6,505명	1706명	1,778명	1,598명	1,423명

### □ 2020년 지원계획

#### ○ 참여대상자

구분	참여학교	인원	사업비	산출기초	비고
계	27교	2,212명	774,200천원		
중학교 3학년	14교	866명	303,100천원	350,000원×866명	
고등학교 2학년	13교	1,346명	471,100천원	350,000원×1,346명	

- 당초 연수예정지 : 중국 상해 일원(3박4일)

※ 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추진 중단